

## 학부제운영규정

제 정 2009. 3.

개 정 2016. 2.

개 정 2024. 1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의 학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신입생 모집)** 신입생은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3조 (기초필수과목)** 학부 내 각 전공의 이해와 전공이수에 필요한 기초 지식의 습득을 돕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초필수과목을 1학년 교과과정에 개설할 수 있다.(개정2016.02.01.)

**제4조 (제1전공 배정신청)** ①학부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당초 입학한 학부에서 제1전공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동일학부내에서 전공단위로 입학(모집)한 경우에는 입학한 전공으로 배정한다.(개정 2016.02.01.)

②제1항에서 정한 제1전공 배정 시기는 제1학년 2학기과정까지 이수한 이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부 운영상 특별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2학년 2학기과정까지 이수한 이후로 할 수 있다. (개정2016.02.01.)

③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 교무처에서 정한 소정 기한 내에 제1전공 배정신청서를 지도교수확인을 거쳐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2016.02.01.)

④전공배정을 하지 않은 재입학생 및 휴학생은 재입학 또는 복학 시 제1전공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2016.02.01.)

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Endicott 자율융합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은 학생 희망전공의 해당학년 편제 정원의 최대 15%범위 내로 한정하며, 최종 전공배정은 학생의 성적, 외국어 능력,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여부 및 교육과정특성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조정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(신설2016.02.01.) (개정2024.01.31.)

**제5조 (제1전공 배정심의)** 제1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에 전공배정위원회를 두며 학부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.(개정2016.02.01.)

**제6조 (제1전공 배정인원 및 기준)** ①제1전공의 전공별 인원배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정하되 총장이 학교의 시설과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거 제1전공의 배정인원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.(개정2016.02.01.)

1. 학생의 희망 및 지도교수 의견
2. 해당학년까지의 성적 또는 외국어 등의 수학능력
3. 기타 각 전공에서 정하는 기준

**제7조 (제1전공 배정결과 공고)** ①학부장은 전공 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전공자의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
②교무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제1전공자의 학적을 확정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제1전공이 확정된 학생은 전공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복수전공 및 부전공)**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.

**제9조 (조직)** 학부에는 학부장 1인과 주임교수, 그리고 교수와 조교를 둔다.

**제10조 (학부장)** 학부장은 학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학부교수회의를 주재하며 학부의 교육과정, 수업운영, 학생지도, 예산운영, 시설사용 등을 조정한다.

**제11조 (주임교수)** 주임교수는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학사주임교수와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학생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 다만 학부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장 또는 주임교수 간에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2조 (교수)** ①교수는 학부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공소속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②학부 내 전공과목 담당 시 동일분야 전공자가 다수인 경우에 분반하거나 분반하지 않을 경우 순환하여 분담하도록 한다.

**제13조 (지도교수)** 학부소속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.

1. 1학년의 지도교수는 학부의 모든 교수가 분담하도록 한다.
2. 제1전공이 결정된 학년의 지도교수는 학부 교수회에서 정한다.

**제14조 (조교)** ①학부의 교육·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.

②학부조교는 주·야간을 구분하여 배정하거나 담당업무에 따라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③수업조교는 전공교수의 지시를 받아 전공수업을 보조한다.

**제15조 (학부교수회)** ①학부의 학사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부교수회를 둔다.

②학부교수회는 학부장이 주재하며 교과배정, 수업운영, 강사위촉, 학생지도, 예산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.

**제16조 (기타)** 학부제운영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